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237862 구상금 등 청구의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김장천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18,531원 및 그중 29,855,442원에 대하여는 2019. 7. 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3,327,23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13,135,859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각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352,233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39,066,965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20,285,268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은 시흥시 D에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축사(계사) 330㎡,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퇴비사 53.75㎡를 소유하고 있다.

나. C은 2018. 3. 5. 피고에게 건물 중 안쪽 230㎡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차 부분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C은 2019. 4. 3. 소외 E에게 건물 중 앞쪽 165㎡를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F		
증권번호	G		
계약자/피보험자	C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H		
보험기간	2018. 6. 19. ~ 2021. 6. 19.		
담보사항	목적물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건물	화재손해[건물(실손)]	120,000,000원

마. (1) 원고는 E와 사이에 건물 중 임차 부분 및 기계, 시설,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I		
증권번호	J		
계약자/피보험자	E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H		
보험기간	2016. 1. 21. ~ 2021. 1. 21.		

담보사항	목적물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건물	화재손해[건물(비례)]	100,000,000원
	기계	화재손해[기계(비례)]	100,000,000원
	시설	화재손해[시설(비례)]	15,000,000원
	집기비품	화재손해[집기비품(비례)]	5,000,000원
	동산	화재손해[동산(비례)]	20,000,000원

(2) 원고는 또 E와 사이에 머시닝센터기계설비 등에 관하여 "K"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K		
증권번호	L		
계약자/ 피보험자	E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H		
보험기간	2018. 7. 27. ~ 2021. 7. 27.		
담보사항	목적물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계	화재손해[기계(실손)]	131,000,000원

바. 2019. 6. 8. 21:30경 피고의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사. 시흥소방서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I 발화지점 판정

1. 발화지점 판정

○ CCTV : 인접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바 공장동 서쪽 끝 B 사무실, 창고 공간에서 최초 불빛이 발견되며 점차 확대되는 형태로 식별되었음

2.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 발화지점은 목공 작업장 내 실내 측면에 복층 구조로 설치된 창고/사무실 부위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벽과 천정을 통해 실내 전체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VIII 화재원인 검토

1.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추정

② 최종부하 측으로 보이는 냉장고 내부 배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서 의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IX 결론

[감식결과]

- 현장의 잔류된 소훼형태와 관계자의 진술, CCTV 녹화장면을 참고하여 B 사무실/ 창고 용도의 공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1층 창고에서 발굴된 냉장고 내부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

견되었고, 경기도소방학교 감정결과를 토대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함

아. 원고는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보험상종별	피보험자	지급처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금액	비고
I	E	C	2019. 10. 22.	건물 2부분	30,823,390원	중복보험
		E	2019. 7. 9.	기계	40,000,000원	
		E	2019. 10. 22.	시설	7,000,000원	
		E	2019. 10. 22.	시설	5,689,349원	
		E	2019. 10. 22.	기계	50,398,078원	
		E	2019. 10. 22.	집기비품	3,117,108원	
		E	2019. 10. 22.	동산	16,578,743원	
K	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 10. 22.	기계	106,678,600원	
F	C	C	2019. 7. 5.	건물	50,000,000원	중복보험
		C	2019. 7. 31.	건물	69,890,355원	
				건물 2부분	- 30,823,390원	
합 계					349,352,233원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2. 판단

가. 피고의 임차 부분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1) 책임의 발생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임차 부분, 특히 피고가 사용하던 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임차 부분이 전부 소훼되어 임대인인 C에게 원상

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C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결국 C을 대위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업무 종료 후 야간에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점, 피고의 임차 부분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의 구조로서, 화재 내구성이 취약하고, 원래 축사 용도가 개조되어 가구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건축 시기가 2001년경인 점 등을 비롯하여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고의 경제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의 배상액은 40,764,202원(= 58,243,575 × 70%)이다.

나. E의 임차 부분 및 E의 기계에 관한 불법행위책임

(1)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

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사용하던 냉장고 내부 배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결국 냉장고에는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제한

위 피해는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50%로 제한한다.

(3) 피고의 배상액은 C의 건물 부분 30,823,390원(= 61,646,780 × 50%) 및 E의 기계 부분 114,730,939(= (122,783,278 + 106,678,600) × 50%))이다.

다. 소결론

피해 부분	구상금 액수	지연이자 기산일
C : 임차 부분(230㎡)	40,764,202원	2019. 7. 6. ¹⁾ : 29,855,442원 2019. 8. 1. ²⁾ : 23,327,230원
C : 그 외(165㎡)	30,823,390원	2019. 10. 23. : 18,404,920원
E	114,730,939원	2019. 7. 10. : 20,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86,318,531원(= 40,764,202 + 30,823,390 + 114,730,939) 및 그중 29,855,442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7. 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3,327,23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13,135,859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각 이행 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

1) $71,587,592 \times 50,000,000/119,890,355$

2) $71,587,592 \times 39,066,965/119,890,355$